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 - 170호

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대 전 광 역 시 장

1.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

가. 대상지

구 역 명	위 치	기준일	면 적	사업유형	비고
둔산지구 13구역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9번지 일원	2026. 7. 15.	199,760.0㎡	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	
둔산지구 14구역	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4번지 일원	2026. 7. 15.	92,640.6㎡	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	
송촌지구 6구역	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0번지 일원	2026. 7. 15.	135,154.7㎡	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	

나. 지정사유

○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토지분할, 건축물 신축 및 지분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

○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할,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분양권의 인위적 증가를 방지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○ 불필요한 권리 증가로 인한 사업비 상승과 이에 따른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

다.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

○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.

1)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

2)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

3)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

4)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

5)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

※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되,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2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(☎042-270-62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고시도면

□ (둔산지구) 13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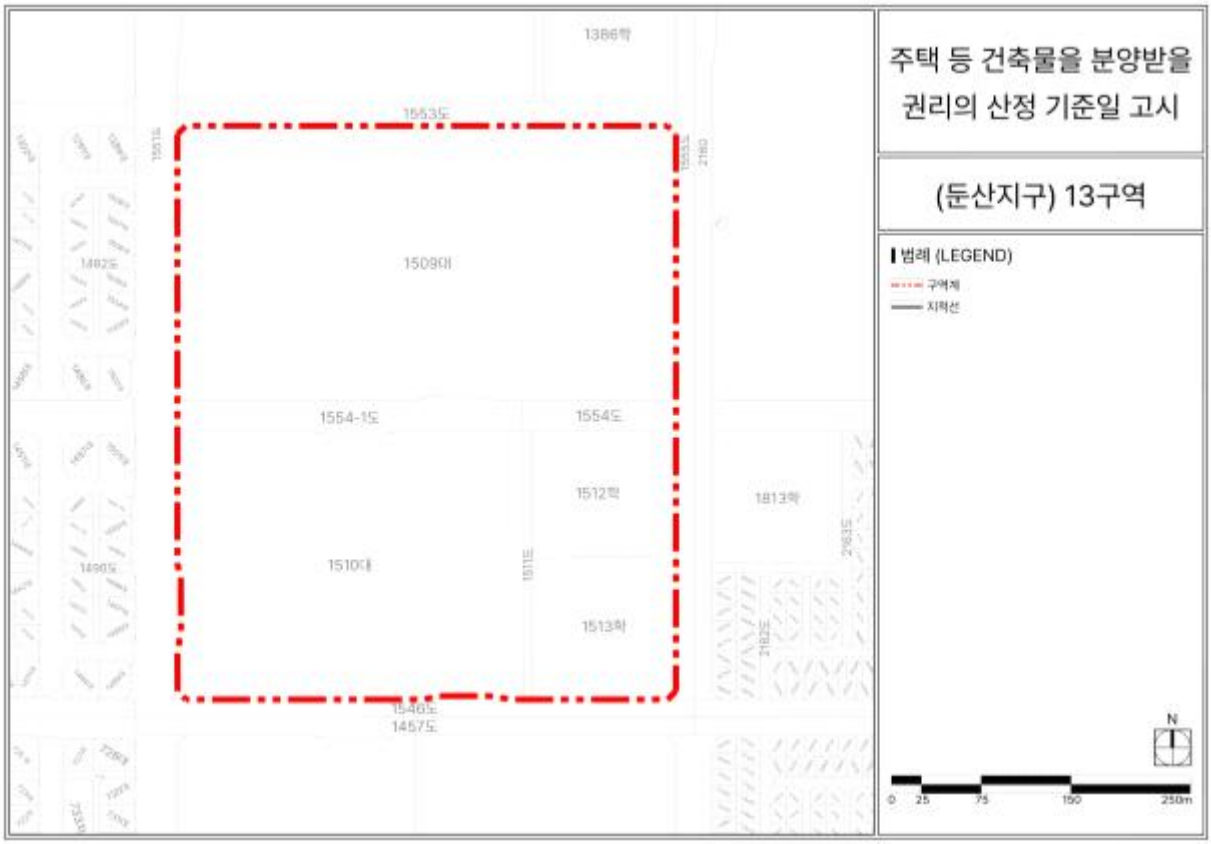

□ (둔산지구) 14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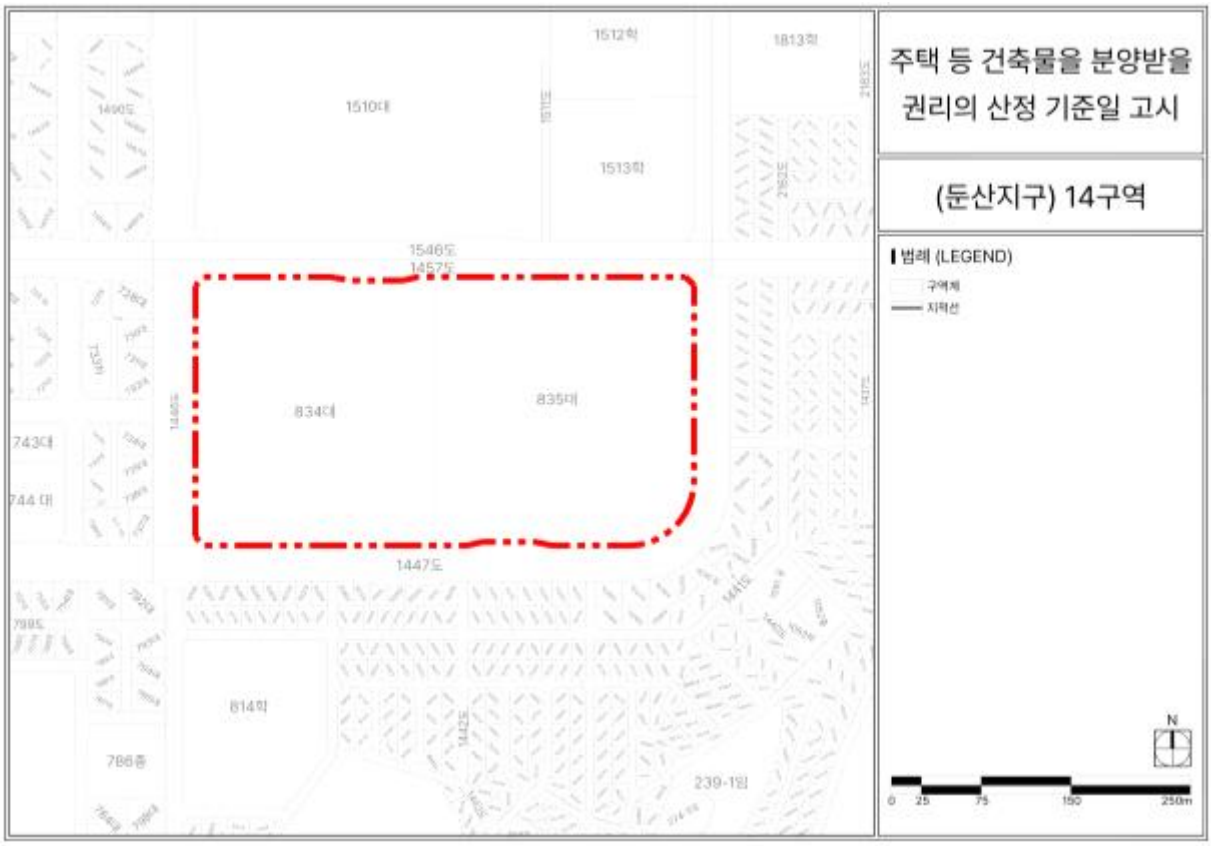

□ (송촌지구) 6구역
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(송촌·중리·법동지구) 6구역
범례 (LEGEND)
구역계
지적선
N
0
25
75
150
250m